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직인생략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 02-761-4205/팩스 02-782-6659
담당부서: 정책연구실 부서장: 고정은 실장 담당자: 조안나 과장 e-mail: ancho12@kcia.or.kr

대화합: 제7-239호

시행일자: 2025.7.4.

수신자: 화장품 제조업자 및
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 요청의 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4889호(2025.7.3.) 관련입니다.

3. 「화장품법」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2조의2 및 「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」(식약처 고시) 제6조에 따라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신속보고* 되지 아니한 **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**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* 「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」(식약처 고시) 제5조에 따른 보고 대상

4. 이에 따라,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**보고기한 내에 2025년 상반기 정기보고**를 하여야 하며,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보고 기간 : 2025.7.1.(화) ~ 7.31(목)

나. 보고 영업자 : 화장품책임판매업자,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

*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

다. 보고 정보 : 2025년 상반기('25.1-6월) 수집된 안전성* 정보

*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·유효성에 관한

새로운 자료, 유해사례 정보 등

라. 보고경로 : 의약품 안전나라(<https://nedrug.mfds.go.kr>) > 전자민원 /보고 > 전자 보고 > 전자보고신청 > “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”

마. 주요 참고 사항

-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'보고내용 없음'으로 보고
-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인체적용시험 중 확인된 유해사례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